

축산물 위생 안전성 강화대책



농림부

요약

□ 축산물 안전성 강화대책 수립배경

- 축산용 항생제 과다사용, 여름철 집단 식중독, 조제 분유 이물 및 병원성미생물 검출, 중국산 불량 갈비탕 유통 등으로 축산물 안전 및 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임.
- 이번 대책은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·판매되도록 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임.

□ 축산물 안전성 강화대책

- ① 농장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제거
 - HACCP 지정대상(64,433개소)에 대하여 2017년까지 10년 동안 사육농가의 50%이상, 전체 대상의 20% 이상을 지정
 - 농장단계에서는 사육시설 현대화, 개량시설 현대화, 친환경축사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시 3년 이내에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
 - 식육판매, 운반, 보관, 집유 등 유통 단계에서는 HACCP을 지정받는 업소와 지정받지 않는 업소의 시장 차별화 추진
 - HACCP 적용업소와 비적용 업소간에 비교 평가 실시
 -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식육판매업 등 유통 단계까지 확대 실시
 -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(3 → 7개)하고,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축소(50% → 30%)

- ※ (현행) 소, 돼지, 식육판매업 → (확대) 소, 돼지, 식육판매업, 닭, 운반업, 집유업, 보관업
- ※ (현행) 1천만원/1개소(국비50%, 자담50%) → (개선) 국비50%, 지방비20%, 자담 30%)
- ②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,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촉진으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
 -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일부의 소득 차이를 직불금으로 지급
- ③ 축산용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
 - 대장균, 살모넬라 등 15종, 1,400여건을 조사해서 내성률이 높거나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는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조치
- ④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대폭 강화
 - 잔류 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율도 크게 확대
 - 검사비율 : (2007)13.5% → (2009)20.0% → (2011)27.0%
 -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검사를 마칠 때까지 해당 가축의 고기뿐만 아니라 부산물까지 유통이 금지(그 전에는 고기만 유통금지)
- ⑤ 조제분유 내 병원성 미생물 및 이물 검사강화
 - 바실러스 세레우스를 필수 검사항목으로 추가하고,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(2007.9)

1. 농장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해 나간다

- 도축장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(HACCP)를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대폭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.
 - HACCP 지정대상에 대해 향후 10년간 사육농가의 50%이상, 판매단계까지를 포함하여 전체 대상의 20% 이상이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.
- 농장단계에서부터 건강하고 위생적인 가축 사육이 이루어져 위해요소가 최소화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.
 - 내년부터 사육시설 현대화, 개량시설 현대화, 친환경축사 설치를 위한 자금지원시 3년 이내에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해 위생과 안전성 제고 효과를 극대화해 나간다.
 -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.
 - 배합사료에 이어 2009년에는 섬유질가공사료(TMR)까지 HACCP 품목으로 포함시켜 사료의 안전성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- 도축단계에서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등급별로 시설 개선 및 운영자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HACCP 수준이 낮은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 - HACCP의 사후관리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키로 했다.
- 식육판매, 운반, 보관, 집유 등 유통 단계에서는 HACCP을 지정받는 업소와 지정받지 않는 업소가 시장에서 차별화 되도록 해 HACCP을 활성화 해 나간다.
 - 내년도에 소비자단체의 연구용역을 통해 HACCP 적용 식육판매업소와 비적용 업소간에 위생관리 실태 및 미생물검사 등에 대한 비교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.
 - HACCP 적용업소의 식육 위생검사 요원에 대한 미생물 검사 교육을 내년부터 무료로 실시한다.
 - 도축장과 가공장에만 지원하던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식육판매업을 포함한 유통 단계까지 확대해서 실시한다.
-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업소에 지원하는 HACCP 컨설팅에 대한 지원 대상을 현재 소·돼지 농가와 식육판매업에서 내년부터 닭 농가, 운반업·보관업·집유업

〈표 1〉 HACCP 지정대상

| 연도 | 돼지 | 소 | 닭 | 가공업 | 포장처리업 | 판매업 | 운반업 | 보관업 | 집유업 | 합계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
| 대상 | 2,500 | 11,700 | 1,600 | 1,598 | 1,806 | 44,012 | 994 | 165 | 58 | 64,433 |
| 2007. 5 | 15 | 0 | 0 | 147 | 358 | 4 | 0 | 0 | 0 | 524 |
| 2017 | 1,500 | 5,210 | 1,200 | 500 | 700 | 3,700 | 300 | 50 | 58 | 13,218 |

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개소당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올려서 지원키로 했다.

※ 개소당 지원조건 : (현행) 1천만원(국비 50%, 자담 50%) → (개선) 1천만원(국비 50, 지방비 20, 자담 30)

2.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,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촉진으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대폭 높여 나갈 계획이다

- 적정 사육밀도 유지,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, 악취방지관리,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 조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농림부 장관이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이에 합당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.
- 환경친화축산농장직불제는 2004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친환경축산직불제가 지난해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개선해 발전시킨 후속대책의 일환이다.
- 아울러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유기 또는 무 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이를 조성하기 위해 관행 축산에 비해 초기에 늘어나는 생산비 또는 감소되는 소득 차이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적극 검토 중이다.
- 2006년 말 52개인 유기축산물 인증농가는 매년 20%이상,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는 매년 30% 이상 확대 인증하여 10년 후에는 유기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수가 전업농가의 6% 이상을 차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3. 축산용 항생제의 내성균에 대한 감시체계가 구축된다

- 항생제 내성균 조사를 지금까지 일회성의 연구사업 형태로 실시해 와서 항생제 내성균 관리가 미흡해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.
- 내년부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시·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대장균, 살모넬라 등 15종, 1,400여건을 조사해서 내성률이 높거나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는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.
- 내성균 감시체계가 구축되면 소비자는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고 축산농가는 항생제의 오·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.

4.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도 대폭 강화한다

- 과거 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, 주사자국과 긴급도살 등 항생제 잔류 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율도 크게 확대한다.
- 검사비율 : (2007)13.5% → (2009)20.0% → (2011)27.0%
-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검사를 마칠 때까지 해당 가축의 고기뿐만 아니라 부산물까지 유통이 금지된다.
- 또한 잔류물질 검사 시료도 근육에서 신장까지 확대한다. 신장은 항생제 잔류가능성이 근육보다 높아 신장까지 검사할 경우 실효성 있는 잔류 물질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 